

제 호

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
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③ 주 소			
④ 면허종별 및 번호	시·도경찰청	종 별	번 호
⑤ 예고 및 취소결정 통 지	<p>○ 귀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(. . .)일부로 경과되었습니다.</p> <p>○ . . . 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「도로교통법」 제 9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.</p>		
⑥ 조 건 부 행정처분 결정내용	취 소 일 자		

※ 알려드립니다.

1.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·도경찰청(경찰서)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다만,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3.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(6시간)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.